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12. 29(목) 10:40

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79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2. 21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2. 21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71,331,611	771,331,611	622,601,831	12,006,600	54,447,176	82,276,004	- <53,068,736>
일반회계	753,864,214	753,864,214	608,145,854	12,006,600	53,695,996	80,015,764	- <50,868,736>
특별회계	17,467,397	17,467,397	14,455,977	-	751,180	2,260,240	- <2,200,000>
의료급여	820,035	820,035	636,085	-	166,950	17,000	-
주민소득	642,392	642,392	291,400	-	350,992	-	-
주차장	16,004,970	16,004,970	13,528,492	-	233,238	2,243,240	- <2,200,000>

※ 명시이월 :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48건 53,068,736천원

4. 검토의견

- 2022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최종 규모는 7,713억 3,161만원으로 당초예산 6,226억 183만원과 제1회 추경 120억 660만원, 제2회 추경 544억 4,717만원, 간주처리 822억 7,600만원임.

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8건 530억 6,873만 6천원임.

- 명시이월(부서별 현황) : 18개부서 48건 53,068,736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 서 명	건수	이월액	연번	부 서 명	건수	이월액
계		48	53,068,736	10	건 축 과	2	69,532
1	자치행정과	1	1,900,000	11	문화체육과	7	4,862,813
2	교육지원과	2	8,685,003	12	청소행정과	4	620,800
3	지역경제과	3	10,693,000	13	주차관리과	2	2,200,000
4	일자리청년과	2	466,905	14	건설행정과	1	3,939,257
5	어 르 신 장 애 인 과	1	457,000	15	도 로 과	2	1,926,973
6	가족정책과	4	5,129,046	16	치 수 과	1	2,520,000
7	아동청소년과	1	20,000	17	보건정책과	2	1,154,927
8	주거정비과	3	461,929	18	의 약 과	1	86,000
9	공원녹지과	9	7,875,551				

-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 : 총 37건 300억 8,290만원임.

(복지가족국 6건 5,606,046천원 푸른미래도시국 14건 8,407,012천원 문화환경국 11건 5,483,613천원, 교통건설국 6건 10,586,230천원)

○ 2022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세부사업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보조금	구비
합계 : 3개 부서 / 6건		6,441,637	5,606,046	3,600,561	1,374,487	630,998
어르신장애인과 (1건/457,000천원)	스마트 경로당 조성	457,000	457,000	457,000		
가족정책과 (4건/5,129,046천원)	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	983,520	933,826		324,945	608,881
	구립 별하어린이집 신축	3,870,117	3,145,678	3,143,561		2,117
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820,000	820,000		820,000	
	생활문화센터 조성	238,000	229,542		229,542	
아동청소년과 (1건/20,000천원)	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·관리	73,000	20,000			20,000

○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부서 6건, 56억 604만 6천원이며,

- 어르신장애인과 : 1건 4억 5,700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비고 (사유)
합계 (1건)		457,000	457,000	
1	스마트경로당 조성	457,000	457,000	· 이월내역 : 스마트경로당 조성관련 사업비 전부 이월 - 행사운영비: 강사료 - 사무관리비: 기기대여료, 홍보비 - 물품취득비: 스마트 안전센서·기능보강, 키오스크 등 - 시책업무추진비: 지역협의체 회의·간담회 [집행시기 미도래]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(12월 교부)

- 가족정책과 : 4건 51억 2,904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 (사 유)
합 계 (4 건)		5,911,637	5,129,046	
1	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	983,520	933,826	· 이월내역 :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및 감리비 · 이월사유 : 연도 내 지출 불가 - 그린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국토부 승인 절차로 지연 - '22.12. 2개소(꿈나래, 정심) 공사 계약 및 착공, '23.1. 2개소(개미, 기쁨) 계약심사 및 입찰 추진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2	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	3,870,117	3,145,678	· 이월내역 : 구립별하어린이집 신축 공사비 등 · 이월사유 : 연도 내 지출 불가 -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'23. 2. 공사 착공 예정
3	금천구 가족센터 건립	820,000	820,000	· 이월내용 : 금천구 가족센터 공사비 · 이월사유 : 연도내 지출불가 사전행정절차, 설계 용역 등으로 '23. 1. 공사 발주 예정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4	생활문화센터 조성	238,000	229,542	· 이월내용 :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비 · 이월사유 : 연도내 지출불가 사전행정절차, 설계 용역 등으로 '23. 1. 공사 발주 예정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

- 아동청년과 : 1건 2,000만원

(단위 : 천원)

연 번	사 업 명	2022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비 고 (사 유)
합 계 (1건)		73,000	20,000	
1	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지·관리	73,000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이월내역 :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및 이행성과 평가 · 이월사유 : 연도 내 지출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. - 인증 심의 1년 유예(심의자료 제출기한: `24. 1.)

○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한 세입·세출예산의 변경 사항 조정과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분 반영 및 이월 사업 확정을 위하여 2022년도 최종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이월 사업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